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80
------------	------

발의연월일 : 2017. 4. 18.

발의자 : 이용득 · 서형수 · 이정미
이석현 · 신창현 · 임이자
우원식 · 한정애 · 문진국
김현권 · 장석춘 · 박홍근
도종환 · 송옥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함. 이에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는”을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 ② (생 략)</p> <p>③ <u>국가는</u>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u>국가는</u>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p> <p>-----</p> <p>-----</p> <p>-----</p> <p>-----</p> <p>-----</p> <p>-----.</p> <p>④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p> <p>-----</p> <p>-----</p> <p>-----</p> <p>-----.</p>